

IMO 제12차 위험물 · 고체화물 ·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참석결과 보고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제12차 위험물 · 고체화물 · 컨테이너 전문위원회(51st Session of Sub-committee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 기간/장소 : 2007. 9. 17.~9. 21.(5일) / 영국 런던, Central Hall Westminster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주임검사원 강길보

II. 의제 목차

- 의제 1. 의제 채택
- 의제 2. IMO 타 기구의 결정사항
- 의제 3. 위험물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와의 조화를 포함한 IMDG Code 및 그 부속서의 개정
- 의제 4. 고체산적화물의 특성평가를 포함한 BC Code의 개정
- 의제 5. BC Code의 강제 적용
- 의제 6. 사고보고 및 분석
- 의제 7. SPS(특수목적선) Code의 검토
- 의제 8. 화물의 적재 및 고박을 위한 안전작업 코드(CSS Code)의 개정

- 의제 9. 곡물을 포함하기 위한 BLU Code의 확대
- 의제 10. 컨테이너의 고박시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 지침
- 의제 11.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 검토
- 의제 12. HSC Code 및 SOLAS 협약에서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에 대한 규정의 적용
- 의제 13. 보호복에 대한 지침
- 의제 14. 원목운반선에 대한 안전지침 개정
- 의제 15.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을 위한 양식과 절차
- 의제 16. 작업 계획 및 DSC 13차 의제
- 의제 17. 2008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제 18. 기타 작업
- 의제 19. 해사안전위원회 보고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2	IMO 타 기구의 결정사항
------	----------------

- DSC 11차 이후 본 전문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아래 기구의 결정사항을 사무국에서 요약 보고함

- MEPC 55, MSC 82, FP 51, DE 50 FAL 34 및 BLG 11

의제 3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와의 조화를 포함한 IMDG Code 및 그 부속서의 개정
------	---

1. DSC12/3 : IMDG Code(34-08) 및 그 부속서의 개정(편집기술 작업반(E&T))

회의결과

- IMDG Code(33-06)의 수정 및 정정
 - IMDG Code(33-06)의 수정 및 정정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초안을 E&T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하여 2008. 1. 1 이전에 회람하기로 결정함
- IMDG Code(34-08)의 개정초안은 이번 회기에서 검토된 전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E&T 작업반에서 편집후 MSC 84차에 채택할 것을 요청함
- 2007년 7월 31일 UN TDG 전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IMDG Code 4.1.1항의 주(note) 부분에 제2급 위험물인 폐기용 에어로졸의 포장에 사용되는 “LP02”를 삽입하기로 결정함
- UN 3476의 적재요건을 적재분류 A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며, E&T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함
- 제1급 물질의 사고처리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급에 적용할 수 있도록 E&T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함
- IMDG Code 제2.9장의 제목
 - IMDG Code 제2.9장의 제목을 기존의 “Class 9-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에서 환경유해물질을 추가하여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Class 9) and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로 변경하기로 함

2. DSC 12/3/1 : IMDG Code의 교육 요건과 운송 및 선적서류상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사무국)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IMDG Code 교육요건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제출한 교육 강제화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운송 및 선적서류상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 개발 관련사항은 E&T 작업반에서 검토하여 DSC 13차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3. DSC 12/3/2 : IMDG Code의 위험물 목록에서 탐피코 섬유를 제외시키자는 제안(멕시코)

회의결과

- 아국은 교육의 요건이 육상중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 강제화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이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표명되었음
-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강제화에 동의하였으며, IMDG Code(34-08) 개정판에 적용하는 것을 MSC에 요청할 것과 영국에서 제안한 교육요건 개정안을 기본으로 E&T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함

5. DSC 12/3/4 : IMDG Code의 면제조항의 사용 관련(CEFIC)

회의결과

- 아국은 상기 규정을 추가할 경우 면제사실을 통보받은 국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을 해주지 않을 경우 화물 운송이 지연되는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음
-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CEFIC의 제안은 면제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E&T에서 추가 검토하여 DSC 13차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6. DSC 12/3/5 : UNSCE TDG 31차 회의 결과 보고(사무국)

회의결과

- UN 결정사항으로 E&T에서 검토 후 필요시 IMDG Code에 반영하기로 함

7. DSC 12/3/6 : IMDG Code와 화물운송단위 물 수납지침간의 조화(독일)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화물운송수납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독일이 MSC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DSC의 새로운 작업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함

8. DSC 12/3/7 : 해양오염물질일 경우 위험물 운송품명에 추가되는 정보관련(독일)

회의 결과

- 전문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편집상 변경하여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독일의 제안에 동의하고 E&T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함

9. DSC 12/3/8, DSC12/3/15 : 과황산 염류와 과황산 암모늄의 격리요건(독일 및 미국)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독일 및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미국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E&T에서 검토 후 마무리하기로 함

10. DSC 12/3/9 : 훈증 소독한 컨테이너에 요구되는 서류관련(벨기에)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벨기에의 제안은 UN TDG에서 검토가 선행된 후 DSC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벨기에가 UN TDG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할 것과 DSC 13차에 다시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제안함

11. DSC 12/3/10 : 니켈-수소 휴대용 축전지의 적재 및 격리(독일)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해당 안전에 대해 향후 UNCOE의 결정사항에 따라 추가검토하기로 결정함

12. DSC 12/3/11 : IMDG Code에 INF Code 정보 추가요청(프랑스)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선사에서 운송하고자 하는 방사성 물질이 INF Code의 적용을 받는 물

질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려 줄 수 있는 개정안으로 선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프랑스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E&T 작업반에서 편집상의 작업을 하기로 결정함

13. DSC 12/3/12 : 제3급 화물의 적재기준(프랑스)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인화성 액체의 선박적재기준이 되는 인화점을 포장등급의 인화점 기준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함

14. DSC 12/3/13 : IMDG Code 제2.9장 및 제2.10장의 편집상 변경(영국)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영국의 제안에 감사를 표시했지만, 편집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E&T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함

15. DSC 12/3/14, DSC12/3/18 : 개정된 해양오염물질 분류기준에 대한 DSC 회람문서 초안(영국 및 사무국)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2개(DSC12/3/18; 사무국, DSC12/3/14; 영국)의 회람문서를 E&T에서 추가 검토하여 각각에 대한 회람문서 초안을 MSC 및 MEPC의 승인을 받기로 결정함

16. DSC 12/3/16 : 포장명세 P001의 특별포장 규정 PP1의 삭제(대한민국)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해당 특별요건은 다양한 형태의 운송수단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므로 UN 위험물운송위원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결정함

17. DSC 12/INF.9 : UN 위험물운송권고와 IMDG Code의 조화(사무국)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비공식적인 작업반을 형성하여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검토사항을 UN 위험물운송전문가 위원회에 제출하고, UN의 결정사항에 따라 차기 DSC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의제 4	고체산적화물의 특성평가를 포함한 BC Code의 개정
------	-------------------------------

1. DSC 12/4 : DSC 11 작업반 보고서 (작업반 의장)

회의결과

- 지난 회기동안 산적화물의 특성 평가를 포함한 BC Code의 개정 및 강제화와 관련한 통신 작업반(CG1) 보고서를 일본이 설명하였음
- 작업반(WG1)의 논의 결과 상세, 특성, 위험성 및 응급절차 부분을 제외한 BC Code의 부록 1(개별화물일람표)을 강제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BC Code의 개정과 관련된 추가 논의사항은 통신작업반(CG2)을 다시 구성하여 DSC 13차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2. DSC 12/4/1 : DRI Fines의 해상 선적 지침(베네주엘라)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3. DSC 12/4/2 : DRI Fines(베네주엘라)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4. DSC 12/4/3 : Direct Reduced Iron (B) (베네주엘라)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5. DSC 12/4/4 : 통신작업반 보고서-제1부 SOLAS 협약(TOR 12) 및 BC Code 목차의 개정안(호주 및 일본)

회의결과

- 기존의 SOLAS Reg.VI/7.4를 삭제하기로 결정함. SOLAS 제6장 B편의 이름을 기존의 Special provisions for bulk cargoes

other than grain에서 Special provisions for solid bulk cargoes로 변경하고 DSC 12/4/4의 SOLAS 개정안(부록 1)을 MSC Resolution 개정 초안으로 승인함

- SOLAS 번호 체계의 변경을 반영하여 INF Code의 개정안을 MSC Resolution 개정 초안으로 승인함
- 작업반(WG1)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BC Code, 2007을 MSC 84차(2008년 5월 개최 예정)의 Resolution 개정 초안으로 승인함
- BC Code의 이름을 Code of Safe Practice for Solid Bulk Cargoes (BC Code)에서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IMSBC) Code로 변경함

6. DSC 12/4/5 : 통신작업반 보고서-제2부

BC Code의 서문 및 제1절 내지 3절 (호주 및 일본)

회의결과

- SOLAS Reg.II-2/19.3.4의 제목을 통풍에서 통풍장치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작업반(WG1)의 논의 결과 부록1(개별화물 일람표) 중 상세, 특성, 위험성 및 응급절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강제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BC Code의 목차 중 ICS의 주장에 따라 제1장의 제목을 General provisions에서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로, 제2장의 제목을 General precautions에서 General loading, carriage and unloading precautions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BC Code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BC Code 제1.3절)을 선적하고자 할 경우 송하주는 선적 전에 선적항의 관할 당국에 화물의 특성을 통보하여야 함. 동 화물이 위험성을 가질 경우 양하항의 관할 당국 및 기국에 통보하여 삼자간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선적항의 관할 당국은 선장에게 화물 특성을 언급하는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BC Code의 제1.3.3절의 서식을 이용하여 1년 이내에 IMO에 해당화물의 일람표를 제출하여 BC Code의 부록1에 삽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비응집물질(non-cohesive material)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작업반(WG1)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운송 중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마른 물질”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결정함
 - 효과적인 통풍(effective ventilation)에 대하여 정의하기가 어려워 이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 BC Code의 제3.5.1절에 화물이 가연성 가스를 발산할 경우 화물창에 기계적 통풍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
7. DSC 12/4/6 : 통신작업반 보고서-제3부
BC Code의 제4절 내지 8절 (호주 및 일본)
- 회의결과
- BC Code의 제5.1절의 트리밍 요건에 SOLAS 제12장의 격창적재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선장이 트리밍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구를 삽입함
- BC Code의 제5.4.4절에 정지각이 35도를 초과하는 비응집화물에 대한 트리밍 절차를 삽입함
8. DSC 12/4/7 : 통신작업반 보고서-제4부
BC Code의 제9절 내지 13절 (호주 및 일본)
- 회의결과
- 질산암모늄, UN 1942 및 질산암모늄비료, UN 2067를 제11.3.1절에서 삭제하자는 CEFIC의 주장에 대하여 실제 질산암모늄 물질이 폭탄제조에 이용된 기록이 있음을 미국이 설명하고 이에 반대하여 의장이 CEFIC의 주장을 기각함
9. DSC 12/4/8 : 통신작업반 보고서-제5부
개별화물일람표 중 Seed Cakes의 분류, 상세, 특성, 위험성, 적재 및 격리, 화물창 청소, 기상 주의, 선적 및 비상절차 (호주 및 일본)
- 회의결과
- 작업반(WG1)에서 통신작업반의 검토결과를 거의 대부분 수용함
 - 미국이 Tapioca를 MHB로 분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작업반(WG1)에서 논의하였으나 관련 기준(criteria)의 부재로 인하여 부결되었음
10. DSC 12/4/9 : 통신작업반 보고서-제6부
개별화물일람표의 주의사항 및 통풍요건 (호주 및 일본)
- 의제내용
- BC Code 부록1의 주의사항(PRECAUTIONS)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지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준문구 1과 표준문구 2를 작성하여 각각의 화물에 삽입함
 - 빌지웰의 보호와 관련하여 표준문구를 작성하여 각각의 화물의 요건을 개정함
 - 항해기간 동안 그룹 C 화물에 대한 고정식 가스소화장치의 요건과 관련된 일부 화물의 요건을 개정함
 - BC Code 부록1의 통풍 요건(VENTILATION)에 대하여 표준문구를 작성하여 각각의 화물 요건을 개정함
11. DSC 12/4/10 : 통신작업반 보고서-제7부 개별화물일람표의 운송, 양하, 청소 및 부록 (호주 및 일본)
- 회의결과
- 개별화물일람표의 운송 요건 중 통신작업반이 제출한 문서 중 영문표현법을 일부 수정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12. DSC 12/4/11 : Direct Reduced Iron (A) 및 (B) (캐나다)
-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13. DSC 12/4/12 : 산적 상태의 DRI Fines의 운송 (영국)
-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14. DSC 12/4/13 : Direct Reduce Iron(DRI)의 산적 운송 (프랑스)
-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15. DSC 12/4/14 : DRI (A) Briquettes, hot moulded가 아닌 DRI Fines의 정의에 필요한 정보 (마셜아일랜드, 말타 및 INTERCARGO)
-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16. DSC 12/4/15 : 자체양하 타입 선박에 대한 BC Code의 석탄운송요건 개정 (캐나다)
-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DRI Fines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반(WG1)에서 자체양하타입선박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17. DSC 12/4/16 : Formed Solid Sulphur의 분류 (독일 및 캐나다)

회의결과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적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긴급 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작업반(WG1)에서 SULPHUR (formed, solid)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 논의하여 DSC 13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18. DSC 12/4/17 : 개별화물일람표의 주의 사항 및 통풍 요건 (CEFIC)

회의결과

- CEFFIC의 주장에 대하여 ICS가 안전 측면에서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의장이 작업반(WG1)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고글만을 사용하도록 의사결정 하였음

19. DSC 12/4/18 : BC Code의 개정안에 대한 코멘트 (일본)

의제내용

- DSC 12/4/10의 부록4에 포함된 석탄에 대한 격리 및 적재요건 중 제5조의 표현법대로 기존 제4조를 “*This cargo shall not be stowed adjacent to sources of heat.*”로 변경하도록 제안함

- BROWN COAL BRIQUETTES 화물의 적재 요건 제8조에서 해치커버가 추가로 sealing tape를 이용하여 sealing 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통신작업반에서 삭제하였으나, 제1조에도 그러한 문구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자고 제안함

- DSC 12/4/8 및 DSC 12/4/8에서 질산암모늄 화물들에 대한 선적 및 양하 요건 중 병커수급이나 연료유의 펌핑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해석상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Bunkering of fuel oil shall not be allowed. Pumping of fuel oil in spaces adjacent to the cargo spaces for this cargo, other than machinery spaces, shall not be allowed.*”로 변경하자고 제안함

- 항해 중 AMMONIUM NITRATE UN 1942 화물에 대한 온도가 측정되어야함.
- AMMONIUM UN 1395, UN 1398 및 UN 3170의 화물구역과 기관실 격벽의 가스타이트 요건 표현이 일부 다른 부분을 통일시킴

회의결과

- 관련 내용을 작업반에서 검토하여 문구를 수정함

의제 5	BC Code의 강제 적용
------	----------------

1. DSC 12/5 : BC Code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에 대한 요건(일본)

회의결과

- BC Code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BC Code 제1.3절)을 선적하고자 할 경우 송하

주는 선적 전에 선적항의 관할 당국에 화물의 특성을 통보하여야 함. 동 화물이 위험성을 가질 경우 양하항의 관할 당국 및 기국에 통보하여 삼자간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선적항의 관할 당국은 선장에게 화물 특성을 언급하는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BC Code의 제1.3.3절의 서식을 이용하여 1년 이내에 IMO에 해당화물의 일람표를 제출하여 BC Code의 부록1에 삽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MSC 84에서 BC Code의 개정과 관련된 작업반을 개설하기로 결정함
- BC Code의 개정 작업이 시간이 촉박하여 MSC 84차가 아닌 MSC 85차 (2008년 11월 개최 예정)에서 IMSBC Code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이행 및 2011년 1월 1일부터 강제이행으로 향후 일정이 변경됨

의제 6 | 사고보고 및 분석

1. DSC12/6(리투아니아), DSC12/6/1(스웨덴), DSC12/6/2(캐나다), DSC12/6/3(스웨덴), DSC12/6/4(벨기에), DSC12/6/5(캐나다), DSC12/6/6(네덜란드), DSC12/6/7(독일), DSC12/6/8(독일), DSC12/6/9(미국), DSC12/6/10(칠레), DSC12/6/11(대한민국), DSC12/6/12(사무국) : 각 국의 CIP 결과 및 사고분석보고

회의결과

- 일부 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CIP결과를 보면 결함율에 광범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CIP를 이행함에 있어 공통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CIP 보고서에 대상 컨테이너가 임의 검사인지 선정 검사인지 여부를 보고해 주면 통계자료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함
- 의장은 DSC 13차에도 많은 국가에서 CIP 결과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함

의제 7 | SPS(특수목적선) Code의 검토

1. DSC 12/7 : 개정 SPS Code 제7장 (영국)

회의 결과

-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국가(마셜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페루, 폴란드)에서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의장은 동 의제를 DE 51차에서 재 논의기로 결정함

의제 8 | CSS Code의 개정

1. DSC 12/8 : CSS Code의 개정

러시아의 화물운송에 관한 규칙 및 특수화물과 지역간 무역을 고려한 구조화물에 대한 비이동 범주의 계산방법 및 화물의 정보(러시아)

회의결과

- 그리스를 포함한 다수 국가(캐나다, 노르웨이, ICS, 독일, IACS, 스페인, 미국, 파나마)에서는 특정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MSC Circular 형태로의 회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작업반(WG2)에서 논의된 결과 차후 IMO 사무국의 의견을 검토하여 DSC 13차에서 정보회람 방법을 결정하기로 함

의제 9	곡물을 포함하기 위한 BLU Code의 확대 적용
-------------	------------------------------------

회의결과

- 제출된 문서가 없으며, 의장은 BLU Code 화물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DSC 13차에 많은 문서를 제출토록 요청함

의제 10	컨테이너의 고박시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 지침
--------------	-----------------------------------

1. DSC 12/10 : 컨테이너의 고박시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 지침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작업반)

회의결과

- CSS Code 및 화물고박 지침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작업반(WG2)에서 논의 되었지만 시간의 부족으로 CSAP에 관한 항목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 항목은 차후 DSC 13차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재논의 및 완료 목표일을 2008년으로 연기함

2. DSC 12/10/1 : 컨테이너의 고박시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에 관한 지침 개발을 위한 통신 작업반의 보고서(영국)

회의결과

- 작업반(WG2)에서 한국, 일본, 파나마는 동 지침의 설계사항과 관련하여 lashing 작업 공간의 너비를 최소 750mm로 제한할 경우 container loading capacity의 감소는 물론 현존선 적용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DE 전문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

- 동 지침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여 DSC 13차에 새로운 의제로 채택 및 완료 목표일을 2009년으로 연기함

3. DSC 12/10/2 : 컨테이너 고박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컨테이너선의 안전성 평가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ICHCA)

회의결과

- 단순 보고문서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의제 11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 검토
--------------	-------------------------------------

1. DSC/12/11 : BC Code 부록 8의 개정(독일)

회의결과

- 독일에서 제출한(DSC 12/11, DSC 12/INF.3) BC Code 부록 8인 “선박에서의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의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메틸 브로마이드는 아직까지 해당약품을 대체할만한 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약품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계속 유지하기로 동의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초안작업반(DG1)에서 검토하기로 함
- 의장은 “선박에서의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를 BC Code 및 IMDG Code에 맞게 각각 개정하여 두개의 MSC 회람 문서 초안을 개발해 줄 것을 초안 작업반에 요청하였음
- 초안작업반은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함 - 화물창의 훈증소독 기준 개정안을 제출하

- 였으며, MSC 84차의 승인을 받은 후 BC Code 및 Grain Code의 부록에 삽입할 것
- 화물운송단위물의 훈증소독 기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MSC 84차의 승인을 받은 후 IMDG Code 부록에 삽입할 것
- 해당 기준이 언급되어 있는 SOLAS 제6장, IMDG Code, BC Code 관련 문구를 개정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할 것
-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초안작업반 보고서에 동의하였으며, 추가사항은 DSC 13차에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의제 12	HSC Code 및 SOLAS 협약에서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에 대한 규정의 적용
--------------	---

1. DSC 12/12, DSC 12/12/1 : 통신 작업반 보고서(일본) 및 이에 대한 일본의 견해

회의결과

- 일본에서 제출한 통신작업반 보고서(DSC 12/12)에 대한 영국의 견해(DSC 12/12/1)에 전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동의함
- 전문위원회는 상기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작업반(WG3)에서 추가 검토할 것과 현존선 적용기준을 마무리한 개정안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함
- WG3은 작업반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보고함
 - 표에 주어진 선박 설비요건의 기준이 되는 인화점 중 23℃ 기준을 IMDG Code의 분류기준과 통일시키고, 동 표의 “60℃<” 기준은 삭제하기로 동의함

- 방폭형 기계적 환기장치 적용에 관한 사항은 FP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 UN1082와 UN3399의 포장등급 I 및 II 갑판하부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 상기 두 가지 안에 따라 SOLAS Reg. II-2/19.3의 <표19.3> 및 2000 HSC Code의 <표7.17-3>의 개정안을 제출함(해당문서 Annex 4 및 5 참조)
- 위험물운송선에 요구되는 특정요건에 대한 표준적합양식에 대한 MSC 회람문서 초안을 제출함
- 제5.2급 위험물과 기계실이 접하는 격벽은 절연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작업반 보고서에 동의하고 해당 개정사항이 IMDG Code (34-08)에 맞추어 적용될 수 있도록 MSC에 요청하기로 결정함

의제 13	보호복에 대한 지침
--------------	-------------------

- 제출문서가 없음

의제 14	원목운반선에 대한 안전지침 개정
--------------	--------------------------

1. DSC 12/14 : 원목운반선에 대한 안전지침 개정(스웨덴)

회의결과

- 핀란드는 원목운반선의 복원성 상실 및 화물의 이동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스웨덴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였으며, 이에 미국, 캐나다, 러시아, 네덜란드에서 적극 지

지를 표명함

- 스웨덴을 작업반 의장으로 회기 간 통신작업반 및 DSC 13차시 작업반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의제 15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을 위한 양식과 절차
--------------	------------------------------

1. DSC 12/15 :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을 위한 양식과 절차(ACS)

회의결과

- 영어로 기재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Working Language에 따라 불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가지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작업반(WG2) 논의 결과 Working Language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된 화물고박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함
- DSC 13차에서 MSC/Circ.745 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의제 16	작업 계획 및 DSC 13차 의제
--------------	---------------------------

회의 결과

- DSC 12 의제 중 BC Code의 강제적용(의제 5), SPS Code의 검토(의제 7), HSC Code 및 SOLAS 협약에서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에 대한 규정의 적용(의제 12)은 작업계획을 완료함에 따라 이를 내년도 의제에서 삭제하고 다음의 의제를 추가의제로 결정 및 MSC 84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1972 CSC 코드의 개정

- 컨테이너 고박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관한 지침의 강제적용
- 화물운송구의 포장에 관한 지침의 검토
- 2008년에는 E&T Group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며 2009년에 회의를 2번 개최하기로 결정함
- 통신작업반 2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함
 - 원목운반선에 대한 안전지침 개정
 - BC Code의 개정
- 작업반 5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함
 - BC Code 개정
 - 원목운반선에 대한 안전지침 개정
 -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 검토
 - CSS Code의 개정
 - 화물운송구의 포장에 관한 지침의 검토

의제 17	2008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

회의 결과

- 현 의장(Madam, Olga Pestel Lefevre) 및 부의장(Mr. Juan P. Heusser)이 2008년 의장으로 재선됨
- 아국 대표단은 현의장이 재 선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함

의제 18	기타 작업
--------------	--------------

1. DSC 12/18 : 컨테이너 점검 자격과 관련한 CSC 협약의 해석(러시아)

회의 결과

- ICS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은 CSC Reg.

2.2(a)의 해석 오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음을 언급하며, 동 의제가 DSC 차 후 의제로 채택되기 위하여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통일함

2. DSC 12/18/1 : 컨테이너 계속적 점검 프로그램의 원칙 및 범위에 관한 제안(러시아)

회의결과

-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의견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벨기에)이 다수 있었으며, 의장은 차후 DSC 주요의제로의 채택할 수 있도록 MSC 84에 제출하기로 함

- BC Code의 강제화와 관련한 관련 국내법령을 검토할 계획임
- BC Code의 향후 강제화 일정 및 관련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예정임
- BC Code 2007년판을 국문 번역하여 관련업계에 제공할 예정임
- 편집기술작업반(E&T)에 참여하여 IMDG Code 개정시 아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컨테이너의 고박시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 지침과 관련하여 DE 51차에서 설계관련 사항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므로 관련 전문가의 회의 참석이 요구됨

IV. 아국 활동 사항

- IMDG Code 개정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아국의 입장을 반영함
- BC Code의 개정 및 강제화 관련 통신작업반 및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
- 컨테이너 고박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요소 중 아국의 조선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함
- 부산항, 여수항에서 실시한 위험물컨테이너 점검(CIP) 결과를 본 회의에서 발언하여 국제사회에 아국의 유용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함

V. 향후 조치사항

- IMDG Code 교육요건의 강제화가 MSC 84 차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

VI. 참가 소감

- 의제별 및 분야별로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여 필요한 작업반(WG)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음, 향후 DSC 13에서는 컨테이너의 고박시 안전한 작업 환경의 제공 지침이 중요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므로 조선공업협회에서 반드시 참여하여 아국의 조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차기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기간 통신작업반에 참여할 예정이며 산업계와 정보를 공유하여 아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임
- 본 전문위원회의 작업범위가 다른 위원회와 많이 연계되어 있어 다른 위원회와 정보 수집, 교환 등이 필요함
- 위험물 운송의 근간이 되는 위험물운송전문가 위원회(UN TDG)도 아국의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